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606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노희영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가. 피고 C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6. 체결된 증여계약을 30,803,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803,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한도가 31,000,000원인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련 소송 및 합의

- (1) 피고 C은 2019. 11. 8. 모친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0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2. 4.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598호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2) 이에 원고와 피고 C 등은 2020. 4.경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사건 대상 토지(경북 청도군 D 답 2,945㎡, E 답 341㎡, 이하 통칭할 경우’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수용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3) 그 후 피고 C은 2020. 4. 21.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을 각 취하하였다.

나. 피고 C과 피고 회사 사이의 증여계약

- (1) 피고 C은 2020. 4.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2020. 4.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는 2020. 4. 27. 청도군에 수용되어 같은 날 청도군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회사는 그 수용보상금으로 30,803,31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의 재산상태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와 중고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생략), IBK기업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금원지급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피고 C이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 회사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1)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30,803,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803,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전부 기각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청도군 답 2945㎡

2. 경상북도 청도군 답 341㎡

- 이 상 -